심사보고서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1 2022. 9. 28.(수)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2년 9월 7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8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9월 16일

-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중근 보건복지국장)

가. 제안사유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 O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립하여 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O 위 치 : 충주시(예정) * 관할구역 : 충주, 제천, 단양
- 사업비: 103,326천원(국비 51,663^{50%}, 도비 51,663^{50%}) * '22년 하반기
- O 위탁범위 :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전반
- O 위탁기간: 2022. 11. 1. ~ 2025. 10. 31. (3년)
- O 위탁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 O 수탁자격 :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O 위탁사무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등

3. 검토보고 요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내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위해 설치하는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민간 위탁 운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 5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기관의 민간위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위탁 대상사무의 기 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고, 제4조의2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 성이 있음

- 본 기관의 주요 사무는,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 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등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호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에 해당된다 할 수 있고,
- 사무의 특성상 전문성, 헌신성 및 장애인인권 감수성 등이 필요한바, 관련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민간에 위탁 운영 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본 기관의 설치·운영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충북에서는 2017년부터 동일한 사무를 수행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민간위탁으로 관리·운영중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기관의 민간위탁 운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에 해당되는 바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법 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절차상 만전을 기하고, 또한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위탁 사무들이 효과적이고 투명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 론 요 지 : "생략"
-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O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호 31

제출연월일 : 2022년 9월 7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치 : 충주시(예정)※ 관할구역 : 충주, 제천, 단양
- 사 업 비 : 103,326천원(국비 51,663^{50%}, 도비 51,663^{50%}) * '22년 하반기
- 위탁범위 :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전반
- 위탁기간 : 2022. 11. 1. ~ 2025. 10. 31. (3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 수탁자격 :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위탁사무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등

3. 참고사항

○ 2022년 10월 민간위탁 공고절차 진행 및 선정, 11월 위탁기관 운영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참조

- 충북북부장애인권익용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공모 결과 충북북부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사업이 선정되어(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2756호)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추진 계획을 보고함

* 관련근거:「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 제4항 등 / 공개모집, 민간위탁기간 (3년)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및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계약의 체결)

Ⅱ. 위탁개요

- O 위 치 : 충북 충주시 (예정)
 - ※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할구역 : 충주, 제천, 단양)
- 사업비: 103,326천원(국비 51,663^{50%}, 도비 51,663^{50%}) * '22년 하반기
- O 위탁범위 :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전반
- O 위탁기간 : 2022. 11. 1. ~ 2025. 10. 31. (3년)
- O 위탁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 O 수탁자격 :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O 위탁사무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Ⅲ. 추진체계 및 절차

① 추진계획	■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22. 7월
② 의회동의	■ 민간위탁 의회 동의	'22. 9월
③ 수탁방법	● 수탁기관 선정─ 방법 : 공개모집 (공고기간 15일)─ 자격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22. 9월~10월
④ 수탁심사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구성: 6명 이상 ~ 9명 이내 - 심사: 전문성, 사업실적, 사업계획 등 - 결정: 최고 득점자 선정	'22. 10월
⑤ 협약공증	■ 협약체결 및 공증	'22. 10월
⑥ 사무개시	■ 위·수탁 사무개시	'22. 11월

Ⅳ. 세부추진계획

1 의회보고

○ 동의시기 : '22년 9월 정례회기 중

O 동의근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 제1항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 선정공고

- 공고기간 : '22. 9. 26. ~ 10. 10. (15일)
- 공고방법 : 도 홈페이지 공고
- 선정방법 :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심사·결정 (고득점자 선정)
- O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 포함)를 둔 비영리법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4항의 요건을 갖춘 자
 -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 운영 취소 내지 해지 처분을 받거나 법인 또는 대표자가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은 제외
 - ※ 수탁 선정 후 발견 시에는 수탁 선정을 무효로 함
- O 위탁조건
 - 관계법령·조례·지침 등을 준수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
 -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

③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O 관련근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및 제8조
- 개최시기 : '22. 10월
 - 구성인원 : 6명 이상 ~ 9명 이내 (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 당연직 3(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보건복지국장), 기타(전문가) 위촉
 - 심사항목 : 신청기관의 전문성, 사업실적, 사업계획 충실도 등 ※ 기타 필수조건 확인(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및 운영기준)
- O 계획설명 : 신청기관 사업계획 설명
- O 수탁자 선정 : 최고 득점기관 수탁관리자 선정
 - 1개 법인이 신청하였을 경우 추가 공모 (2개 이상의 법인이 신청하였을 때 심의)

- 단, 추가공모에도 1개 법인만이 신청할 경우 그 법인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2개 이상의 법인이 신청하였더라도 위원회에서 전부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 재공모
- 선정기관이 협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선정

④ 협약체결 및 공중

○ 체결시기 : '22. 10월

O 협약내용: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 등

∨. 향후계획

O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22. 9월

O 수탁기관 선정공고 : '22. 9월 ~ 10월

O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2. 10월

O 협약 및 공증 : '22. 10월

○ 위·수탁사무 개시 : '22. 11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 탁 추진에 따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자 함

□ 추진근거

O「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4조의2

□ 민간위탁 현황

O 위탁사무 :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O 위탁기관 :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O 위탁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최초 위탁)

O 위탁기간 : 2022. 11. 1. ~ 2025. 10. 31. (3년)

○ 예 산 액 : 103,326천원(국비^{50%} 51,663, 도비^{50%} 51,663)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주요 위탁사무 >

-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5.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 7.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 8.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의견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비고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및 장애인학대예방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공공성과 공익성의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17년 보건복지부공모 선정으로 우리 도가 설립한 기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인사업 추진을 위해 장애인학대예방 및 방지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통한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내 장애인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기능 을 위해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③ 경제적 효율성	○ 추가 설치 시 시설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공모하여 민간사무만 위탁하는 것으로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있음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장애인 분야의 전문지식, 인력, 네트워크 등을 활용 하여 도내 장애인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장애인단체 활성화 제고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매년 사업계획에 기반하여 목표 대비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사업성과 측정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으며, 위·수탁 체결을 통해 운영방식 및 사업계획 관리를 통해 투명성 제고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지휘·감독)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 장애인옹호기관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장애인 관련 기관 네크워크 및 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피해를 적극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쉼터 입소 및 행정비용 등 절감	

□ 검토결과 : 적정

-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 도내 장애인 관련 기관(피해장애인쉼터 등)과 협력체계 구축 으로 '공공성'과 '공익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22 년 6월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되어 설치·추진 중인 기관임
- 장애인학대 예방교육(장애인, 신고의무자, 관련기관 종사자 등), 장애인의심사례 신고 접수 시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장애인 및 가족 사후관리, 학대판정위원회 운영, 장애인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사업을 통한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여
- 학대의심사례 개입 관련하여, 기존 충북내 옹호기관 실적을 보면 2019년 전국 3위(경기>부산>충북),
 2020년 전국 4위(경기>서울>부산>충북),
 2021년 전국 2위(경기>충북)로 적극적 사례발굴 및 개입에 대해 전국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 공공적 성격이 명확하고, 민간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u>민간위탁으로</u>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O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제출·심의 : '22. 9.
- O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결과 공고 : '22.10.
- O 위·수탁 협약 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22.10.

붙임1 기관현황 및 운영성과

□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황

○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63번길 61-54(라데팡스 쏠레이관 303호)

○ 수탁기관 : (사)충북장애인부모연대 (대표 민용순)

○ 위탁기간 : 2020. 8. 24. ~ 2025. 7. 23. (5년)

○ 사 업 비 : 281,652천원 (국비 103,326, 도비 178,326)

○ 조직구성 : 5명 (기관장 1(신해), 팀장 1, 상담원 2, 사무원 1)

○ 주요업무 : 장애인 학대 상담, 조사, 응급조치, 사후관리 등

□ 운영성과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처리 실적: '19년 전국 3위, '20년 전국 4위, '21년 전국 2위

	2017.8.	2018	2019	2020	2021	합계	
학대 신고 접수	14	100	199	199	320	832	
현장조사 및 응급 (학대사건 현장조사	8	62	132	129	332	663	
피해장애인과 그 사후조치(신고건수)	가족·학대행위자에 대한 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정보제공)	14	100	199	199	145	657
학대피해자 심리 (상담지원으로 회복	8	20	28	5	5	66	
홍보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한 장애인	홍보 캠페인 및 예방교육 (홍보를 통한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분위기 조성)		20	50	35	31	141
기관운영위원회 (기관홍보활동 및	기관운영위원회 운영 (기관홍보활동 및 기관의 발전을 위한 지원)			4	3	6	15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권리구제 및 체계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	2	3	1	2	8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회복	사법지원 (사법/만등고소고발전정등지원	-	12	23	33	30	98
	쉼터지원 (장애인의 임시거주지지원)	-	10	1	10	5	26
	심리치료 및 병원진료 (전문가의 치료지원)	1	6	11	16	9	43
관계기관과의 MOU로 협력체제 구축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체제 구축)		20	11	8	5	10	54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및 충청북도청 업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 (네트워크 형성 및 업무 소통)	2	12	12	12	12	50
	충청북도청 업무 (실적보고(매월) 및 동향보고 등)	6	18	12	12	12	60

붙임2 예산지원 및 전국 기관 현황

□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지원 현황 (보조금)

(단위: 천원, 2022.6.1.기준)

구 분	총사업비		지 방 비			
		국 고	계	시·도		
계	1,268,396	545,698	722,698	620,698		
2017년	95,000	47,500 47,500		47,500		
2018년	190,140	95,070	95,070	95,070		
2019년	215,096	96,548	118,548	118,548		
2020년	242,508	101,254	141,254	141,254		
2021년	244,000	102,000	142,000	40,000		
2022년	281,652	103,326	178,326	178,326		

^{※ 2019}년 이후 국도비매칭사업 지원 외 추가 도비보조금 지원

□ 전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현황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중앙 1개**, 지역 19개 기관 설치운영(2022.6.1.기준)

(단위: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운영	19	1	1	1	1	1	1	1	1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운영	2	1	2	1	1	1	1	1	1

^{*} 충북도 1개소 설치·운영 결정 (2022. 5. 24.)

붙임3 관련법령

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u>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u>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 · 운영
- 5.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 (중략) ...
- ④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지원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0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제59조의11제4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1. 제36조의8 및 제36조의9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기준 및 상담원 자격기준의 충족 여부
- 2. 장애인권익옹호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9조의11제4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은 민간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 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
- 4.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④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1/3을 넘을 수 없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 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 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체결)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관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민간위탁의 목적
- 2.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 4.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 5. 위탁기간
- 6. 수탁기관의 의무
- 7. 계약위반 시의 책임
- 8.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홈페이지와 공보에실어야 한다. ④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